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2. 2. 9 선고 2021가단4410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김정원, 유병연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과 피고 사이에 2021. 5. 31.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위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C(주민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33782호 양수금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C의 아버지인 D는 2020. 8. 25. 사망하였는데, D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피고, 자녀들인 C, E, F이 있었다.

다. 피고, C, E, F은 2021. 5.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하동등기소 2021. 6. 4. 접수 제718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그런데 C은 무자력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C의 상속 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는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2/9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판결)

판사 이아영